

#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8.17.(목)]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상 하이라이트 표기 삭제, 글자 색상 검정으로 통일로 변경됨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준공검사(2023.07.28.)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아파트(후분양제 주택)으로 마이너스옵션제 및 발코니확장 개별공사를 선택할 수 없으며, 견본주택을 별도로 건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된 동호수의 마감재를 본 아파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23년 7월 28일 준공검사가 완료된 아파트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공급금액은 마이너스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준공검사(2023.07.28.)된 후분양 아파트이므로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검사(2023.07.28.)가 완료된 아파트로서 모든 세대가 발코니 확장 시공이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개별공사 및 미확장 공사는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된 단지이므로 기시공된 마감재, 가전 및 가구류 등 세대 내부품목을 포함한 모든 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해야 하며, 기시공된 품목에 대한 변경요구 및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가 샘플하우스로 사용흔적이 있을 수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01동 205호
  - 샘플하우스(101동 205호)외 세대는 청약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된 세대 현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토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샘플하우스는 해당호실(101동 205호) 당첨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파손부위 및 오염부위 등을 원상복구 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공고문 전문을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샘플하우스에 당첨되어도 당첨취소를 요청할 수 없으며,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고 향후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모든 공사가 완료된 선시공 후분양 상품이므로,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계약체결 이전까지 당첨 세대 사전 방문이 가능하며, 사전 방문 시 공사 상태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샘플하우스는 현장에 설치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2023년 8월 17일)로부터 당첨자발표일 이전(2023년 9월 5일)까지 일반에게 오픈됩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샘플하우스 관람,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청약과 관련하여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관련서류 등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확인'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8.17.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용인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연령조건은 만 나이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17)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17.)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자(2022.08.17.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입국 후 7일 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 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불인정 되며 기타 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친환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23.5.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1호에 의거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주택의 경우 소유 기간은 무주택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전용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수도권은 3억원)이하인 경우에 한함)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 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등·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분양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분양홍보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분양홍보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yongin-centrevill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본 공급(분양)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관련서류의 제출 등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신고를 거부하거나 사업주체의 요청사항에 협조하지 않아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해도 계약자가 전부 배상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6억 초과 주택형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법인 주택 거래 계약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 본 아파트의 전매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어떠한 보장(전매주선보장, 전매수익보장 등)이나 약속을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 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08월 28일(월)	08월 29일(화)	08월 30일(수)	09월 05일(화)	09월 18일(월) ~ 09월 20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당사 분양홍보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12-1) TEL.1551-2121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분양홍보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당사 분양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7.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용인시 주택과 - **12912호(2023.08.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12-1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9층~19층, 3개동 총 171세대 일반분양

[특별공급 81세대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6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7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29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5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14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3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공급대상 (단위: 세대, m<sup>2</sup>)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408	01	084.8243A	84A	84.8243	22.0151	106.8394	46.6488	153.4882	54.3073	17	2	2	3	1	2	10	7	1
		02	084.8951B	84B	84.8951	21.8790	106.7741	46.6876	153.4617	54.3527	25	3	3	5	1	3	15	10	2
		03	084.8951C	84C	84.8951	21.8790	106.7741	46.6876	153.4617	54.3527	1	-	-	-	-	-	-	1	-
		04	084.8243D	84D	84.8243	21.9009	106.7252	46.6488	153.3740	54.3073	6	-	-	1	-	-	1	5	-
		05	084.8243E	84E	84.8243	21.9009	106.7252	46.6488	153.3740	54.3073	1	-	-	-	-	-	-	1	-
		06	084.8799F	84F	84.8799	21.7645	106.6444	46.6793	153.3237	54.3429	11	1	1	2	-	1	5	6	1
		07	084.9325G	84G	84.9325	21.6498	106.5823	46.7082	153.2905	54.3766	13	1	1	2	-	1	5	8	1
		08	084.8779H	84H	84.8779	22.1684	107.0463	46.6781	153.7244	54.3417	16	1	2	2	-	1	6	10	1
		09	084.8627I	84I	84.8627	22.0756	106.9383	46.6698	153.6081	54.3319	16	2	2	2	1	1	8	8	1
		10	084.9905J	84J	84.9905	22.1047	107.0952	46.7401	153.8353	54.4137	18	2	2	4	1	2	11	7	1
		11	084.8860K	84K	84.8860	22.4450	107.3310	46.6826	154.0136	54.3468	18	2	2	4	1	2	11	7	1
		12	084.8860L	84L	84.8860	22.4450	107.3310	46.6826	154.0136	54.3468	1	-	-	-	-	-	-	1	-
		13	084.9154M	84M	84.9154	21.0726	105.9880	46.6988	152.6868	54.3657	13	1	2	2	-	1	6	7	1
		14	084.9376N	84N	84.9376	23.2862	108.2238	46.7111	154.9349	54.3799	7	1	-	2	-	-	3	4	1
		15	084.9376O	84O	84.9376	23.2862	108.2238	46.7111	154.9349	54.3799	1	-	-	-	-	-	-	1	-
		16	118.9605	118	118.9605	32.5988	151.5593	65.4217	216.9810	76.1625	1	-	-	-	-	-	-	1	-
		17	130.8935	130	130.8935	35.0801	165.9736	71.9843	237.9579	83.8024	1	-	-	-	-	-	-	1	-
		18	131.5362A	131A	131.5362	34.9600	166.4962	72.3378	238.8340	84.2138	1	-	-	-	-	-	-	1	-
		19	131.7836B	131B	131.7836	35.0160	166.7996	72.4739	239.2735	84.3722	1	-	-	-	-	-	-	1	-
		20	132.4306	132	132.4306	35.5081	167.9387	72.8295	240.7682	84.7865	1	-	-	-	-	-	-	1	-
		21	133.6139	133	133.6139	36.2699	169.8838	73.4804	243.3642	85.5441	1	-	-	-	-	-	-	1	-
		22	139.9067	139	139.9067	37.1785	177.0852	76.9410	254.0262	89.5729	1	-	-	-	-	-	-	1	-
합계											171	16	17	29	5	14	81	90	11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 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며, 각 세대의 상태가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확인 후 청약바랍니다.

※ 상기 면적은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등 단순 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인.동의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전체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 상의 표기이며, 분양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동호수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한 주택형을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불가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총분양가)	계약금(10%)		잔금(90%)
								1차 (계약시)	2차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2024년 3월 25일)
84A	17	101 (1)	2	1	328,970,000	366,080,000	695,050,000	10,000,000	59,505,000	625,545,000
			3	1	342,750,000	381,420,000	724,170,000	10,000,000	62,417,000	651,753,000
			4~5	2	349,820,000	389,280,000	739,100,000	10,000,000	63,910,000	665,190,000
			6~9	4	353,350,000	393,220,000	746,570,000	10,000,000	64,657,000	671,913,000
			10~18	9	360,420,000	401,080,000	761,500,000	10,000,000	66,150,000	685,350,000
84B	17	102 (1)	1	1	315,280,000	350,850,000	666,130,000	10,000,000	56,613,000	599,517,000
			2	1	325,410,000	362,130,000	687,540,000	10,000,000	58,754,000	618,786,000
			3	1	342,540,000	381,190,000	723,730,000	10,000,000	62,373,000	651,357,000
			4~5	2	349,600,000	389,050,000	738,650,000	10,000,000	63,865,000	664,785,000
			6~9	4	353,130,000	392,980,000	746,110,000	10,000,000	64,611,000	671,499,000
	8	103 (2)	10~17	8	360,200,000	400,830,000	761,030,000	10,000,000	66,103,000	684,927,000
			2	1	328,770,000	365,860,000	694,630,000	10,000,000	59,463,000	625,167,000
			3	1	342,540,000	381,190,000	723,730,000	10,000,000	62,373,000	651,357,000
			4~5	2	349,600,000	389,050,000	738,650,000	10,000,000	63,865,000	664,785,000
			6~9	4	353,130,000	392,980,000	746,110,000	10,000,000	64,611,000	671,499,000
84C	1	102 (1)	18	1	441,420,000	491,220,000	932,640,000	10,000,000	83,264,000	839,376,000
84D	6	103 (2)	10~15	6	360,030,000	400,650,000	760,680,000	10,000,000	66,068,000	684,612,000
84E	1	103 (2)	16	1	441,210,000	491,000,000	932,210,000	10,000,000	83,221,000	838,989,000
84F	11	101 (5)	2	1	335,070,000	372,870,000	707,940,000	10,000,000	60,794,000	637,146,000
			3	1	342,120,000	380,730,000	722,850,000	10,000,000	62,285,000	650,565,000
			4~5	2	349,180,000	388,570,000	737,750,000	10,000,000	63,775,000	663,975,000
			6~9	4	352,700,000	392,500,000	745,200,000	10,000,000	64,520,000	670,680,000
			10~12	3	359,760,000	400,350,000	760,110,000	10,000,000	66,011,000	684,099,000
84G	13	103 (1)	2	1	328,180,000	365,200,000	693,380,000	10,000,000	59,338,000	624,042,000
			3	1	341,930,000	380,500,000	722,430,000	10,000,000	62,243,000	650,187,000
			4~5	2	348,970,000	388,350,000	737,320,000	10,000,000	63,732,000	663,588,000
			6~9	4	352,500,000	392,270,000	744,770,000	10,000,000	64,477,000	670,293,000
			10~14	5	359,550,000	400,120,000	759,670,000	10,000,000	65,967,000	683,703,000
84H	16	101 (3)	2	1	332,970,000	370,540,000	703,510,000	10,000,000	60,351,000	633,159,000
			3	1	339,980,000	378,340,000	718,320,000	10,000,000	61,832,000	646,488,000
			4~5	2	346,990,000	386,140,000	733,130,000	10,000,000	63,313,000	659,817,000
			6~9	4	350,490,000	390,040,000	740,530,000	10,000,000	64,053,000	666,477,000
			10~17	8	357,500,000	397,840,000	755,340,000	10,000,000	65,534,000	679,806,000

84I	16	101 (2)	2	1	329,270,000	366,430,000	695,700,000	10,000,000	59,570,000	626,130,000
			3	1	343,070,000	381,770,000	724,840,000	10,000,000	62,484,000	652,356,000
			4~5	2	350,140,000	389,650,000	739,790,000	10,000,000	63,979,000	665,811,000
			6~9	4	353,680,000	393,580,000	747,260,000	10,000,000	64,726,000	672,534,000
			10~17	8	360,750,000	401,450,000	762,200,000	10,000,000	66,220,000	685,980,000
84J	18	102 (2)	1	1	309,640,000	344,570,000	654,210,000	10,000,000	55,421,000	588,789,000
			2	1	319,660,000	355,730,000	675,390,000	10,000,000	57,539,000	607,851,000
			3	1	343,570,000	382,330,000	725,900,000	10,000,000	62,590,000	653,310,000
			4~5	2	350,650,000	390,220,000	740,870,000	10,000,000	64,087,000	666,783,000
			6~9	4	354,190,000	394,160,000	748,350,000	10,000,000	64,835,000	673,515,000
			10~18	9	361,280,000	402,040,000	763,320,000	10,000,000	66,332,000	686,988,000
84K	18	102 (3)	1	1	320,230,000	356,350,000	676,580,000	10,000,000	57,658,000	608,922,000
			2	1	327,110,000	364,020,000	691,130,000	10,000,000	59,113,000	622,017,000
			3	1	334,000,000	371,680,000	705,680,000	10,000,000	60,568,000	635,112,000
			4~5	2	340,880,000	379,350,000	720,230,000	10,000,000	62,023,000	648,207,000
			6~9	4	344,330,000	383,170,000	727,500,000	10,000,000	62,750,000	654,750,000
			10~18	9	351,210,000	390,840,000	742,050,000	10,000,000	64,205,000	667,845,000
84L	1	102 (3)	19	1	430,410,000	478,970,000	909,380,000	10,000,000	80,938,000	818,442,000
84M	13	101 (4)	2	1	329,680,000	366,870,000	696,550,000	10,000,000	59,655,000	626,895,000
			3	1	336,620,000	374,600,000	711,220,000	10,000,000	61,122,000	640,098,000
			4~5	2	343,560,000	382,320,000	725,880,000	10,000,000	62,588,000	653,292,000
			6~9	4	347,030,000	386,180,000	733,210,000	10,000,000	63,321,000	659,889,000
			10~14	5	353,970,000	393,910,000	747,880,000	10,000,000	64,788,000	673,092,000
84N	7	103 (3)	2	1	323,030,000	359,480,000	682,510,000	10,000,000	58,251,000	614,259,000
			3	1	329,830,000	367,050,000	696,880,000	10,000,000	59,688,000	627,192,000
			4~5	2	336,630,000	374,610,000	711,240,000	10,000,000	61,124,000	640,116,000
			6~8	3	340,030,000	378,400,000	718,430,000	10,000,000	61,843,000	646,587,000
84O	1	103 (3)	9	1	425,040,000	473,000,000	898,040,000	10,000,000	79,804,000	808,236,000
118	1	101 (5)	13	1	576,440,000	705,628,000	1,282,068,000	10,000,000	118,206,800	1,153,861,200
130	1	102 (2)	19	1	631,260,000	772,739,000	1,403,999,000	10,000,000	130,399,900	1,263,599,100
131A	1	101 (1)	19	1	633,250,000	775,170,000	1,408,420,000	10,000,000	130,842,000	1,267,578,000
131B	1	101 (2)	18	1	634,410,000	776,578,000	1,410,988,000	10,000,000	131,098,800	1,269,889,200
132	1	101 (3)	18	1	638,740,000	781,880,000	1,420,620,000	10,000,000	132,062,000	1,278,558,000
133	1	101 (4)	15	1	646,130,000	790,944,000	1,437,074,000	10,000,000	133,707,400	1,293,366,600
139	1	103 (1)	15	1	673,520,000	824,472,000	1,497,992,000	10,000,000	139,799,200	1,348,192,800

###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분양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 상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공급계약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인지세,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 기한 내에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의 2차 계약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2차 계약금은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의 잔금은 선납에 따른 할인이 적용되며, 선납 할인 적용 기준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해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모든 공사가 완료된 선시공 후분양 상품이므로,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계약체결 이전까지 당첨 세대 사전 방문이 가능하며, 사전 방문 시 공사 상태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면적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면적 합산 시 소수점 3자리 이하에 대해 절사 또는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합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 청약 관련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부적격 사유가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 상 기재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자격 검증 등에 대한 판단 업무는 사업주체에서 실시합니다. 단, 주택소유현황, 중복·재당첨 사실 확인 등 전산검색이 필요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제 또는 해지 조치됩니다.

## 2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84D	84F	84G	84H	84I	84J	84K	84M	84N	합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1	2	-	-	-	-	-	-	-	-	1	4
	국가유공자	-	1	-	-	-	-	-	1	-	-	-	2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1	-	-	-	-	-	1	-	2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	-	-	1	-	1	1	1	-	-	4
	중소기업 근로자	1	-	-	-	-	1	1	-	1	-	-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50%)	1	2	-	1	1	1	1	1	1	1	-	10
	서울시, 인천시(50%)	1	1	-	-	-	1	1	1	1	1	-	7
신혼부부 특별공급		3	5	1	2	2	2	2	4	4	2	2	2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	-	-	-	1	1	1	-	-	5
생애최초 특별공급		2	3	-	1	1	1	1	2	2	1	-	14
합 계		10	15	1	5	5	6	8	11	11	6	3	81

##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 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제4조 제1항 제2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용인 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08.1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li>•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성 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ul> </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위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은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특별공급 현장 접수 시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돈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자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추천기관

- 장애인 : 경기남부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시(분양홍보관 방문 접수 포함) 해당기관에 최초 신청한 주택형에 대해서만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및 입양 자녀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당첨자 선정**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 수 ▶ 청약자 연령]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용인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08.17.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함)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및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 거주자 포함)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경기도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 수도권 물량에서 재경쟁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포함)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 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다자녀 특별공급 운영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 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전용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8% 범위) : 2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이 7년 이내 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08.1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용인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08.17. 이전부터 계속 거주)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용인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08.17.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자세한 사항 및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 기준(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신청자 적용 공통)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li> <li>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거주지역 ▶ 가점산정 기준표]**

- 경쟁이 있을 경우 ①**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08.17.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②**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③**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자세한 사항 및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 전용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9% 범위) : 1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08.1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 기준(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신청자 적용 공통)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용인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08.17.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

## 용인 센터레빌 그리니에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기준 (\*자세한 소득세납부 확인(입증)서류 안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구분(청약신청자 기준)	소득세납부 기준	
근로자 및 자영업자	①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연도의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 청약자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기한은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①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세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함께 제출		

###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휴직 등의 소득산정방법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 등(파업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한다.
- ②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 등을 하고 해당 연도에 복직 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 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 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3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제2에 의거 용인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08.17.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우선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li> </ul>
---------	---

	<p>※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p> <p>※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 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수도권(투기과열지구 아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p> <p>※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주택전시관 또는 은행창구 접수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부한 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p>
<p><b>청약신청 유의사항</b></p>	<p>■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p> <p>■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p> <p>■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p> <p>■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p> <p>■ 상가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p> <p>■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적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p> <p>■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태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하여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p> <p>■ 청약통장 관련 기중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li> <li>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li> <li>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li> <li>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li> </ol> <p>■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로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불가합니다.</li> <li>- 위 내용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li> </ul> <p>■ 접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p> <p>■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p> <p>■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p> <p>■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p> <p>■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p>

**중복청약(당첨 시) 처리기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본인이 동시 청약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 관련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용 60㎡초과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li>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해당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용인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b> <b>(2022.08.17. 이전부터 계속 거주)</b>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 85㎡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대상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신청 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한다. (동 규칙 제2조 제7의 3)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무주택기간 판단기준 예시 • 현재 만 29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5년(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산정) • 기혼(만 28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 • 기혼(만 28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7세이고,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지 2년(혼인기간중)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없습니다. ※ 만30세 이전 이혼, 재혼일 경우 혼인일자의 무주택기간 산정에 적용되는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최초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택공급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

<p>적용기준</p>	<p>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비속 부양가족 판단기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li> <li>•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만30세 미만)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 직계비속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li> </ul> </li> <li>•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li> </ul> </li> </ul> </li> <li>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b>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b>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청약신청자 주민등록에 1년 등재 + 계속해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2년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li> <li>-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li> <li>-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li>-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므로 생모라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li> </ul> </li> </ul> </li> <li>3) 자녀(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b>미혼으로 한정</b>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의 <b>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b>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li> <li>-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li> </ul> </li> <li>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b>외국인인 직계비속</b>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li> </ul>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에 대한 가점 점수는 청약 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p>
<p>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기준일) 및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릅니다.</p>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내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인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35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의거 무주택 세대원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제외)되지만 부양가족수 산정시에는 주택 소유 직계 존속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p><b>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b>500%</b>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b>600%</b>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li> </ul>
<p><b>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ul> </li> <li>*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08.17.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a href="https://www.yongin-centreville.com">https://www.yongin-centreville.com</a>) 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li> </ul>
<p>기타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양홍보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는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분양홍보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분양홍보관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부적격 당첨자는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신청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li> <li>•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세대에 속한 자는 규제지역내 청약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5.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아래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주택형별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 (적용) 공유지분이 아닌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단독상속)와 상속이 아닌 증여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 후 일부 증여 등으로 지분비율이 변경된 경우 일부 증여분은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0.1.19.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변경에 의거 주택의 공유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공유지분 50%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부적격자 통보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 인정)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편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적용) 청약신청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 및 거주(주민등록표에 등재)한 상태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세대원 전체가 이주할 필요는 없으며, 청약신청자만 이주하면 됨)한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 (적용) 개인주택사업자란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해당 업무분야에 주택판매나 분양목적으로 기재된 자를 말하며, 건설이 아닌 매입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개인 주택사업자를 폐업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적용) 매입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적용)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 소유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 (적용) 공급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을 공급받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청약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 (적용) 멸실의 경우에는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여서 멸실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며,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라는 증빙(지자체 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합니다.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 무허가 건물: 종전 건축법(2006.5.8이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지역(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으로 확인)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물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이고, 해당 지자체의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 ▷ (적용) 무허가건물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만 인정되고 연면적 200㎡ 미만 이거나 2층 이하인 건물에 한정합니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 (적용)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서 주택가격 8천만원(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분양권가격은 계약서 상의 공급가격으로 산정) 소형-저가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로 소유한 모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2호 이상 보유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적용) 주택형(타입)을 기준으로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로 인정  
 주택형(타입)을 기준으로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예시)**

- ①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②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
- ③ 분양주택(LH, 지방공사 등)으로서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 ④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 ⑤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⑥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⑦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정당당첨자가 정당계약을 하거나,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잔여세대를 추가 계약한 경우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많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한 주택유형(타입)을 계약한 경우

**4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수도권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023.08.28.(월) (청약Home : 09:00~17:30)	• 인터넷 청약 :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분양홍보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12-1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	1순위	해당 지역	용인시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자(2022.08.17. 이전부터) 수도권 거주자	2023.08.29.(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기타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순위		수도권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023.08.30.(수) 09:00~17:30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토스인증을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분양홍보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분양홍보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분양홍보관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분양홍보관 방문 접수 시 반드시 구비서류 전부를 제출해야 하며,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용인 센터별 그리니에

- ①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에 한함, 용도 : 특별공급 신청용) ②인감도장 ③청약통장순위확인서 ④공통서류 및 해당 특별공급 유형별 서류([**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참조)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를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li> </ul> <p>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li> </ul> <p>③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 50%;">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li> <li>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li> <li>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포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

-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 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 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5 당첨자 발표,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계약 일정

###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자격확인(서류확인)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3.09.05.(화)</li> <li>• 확인방법</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3.09.08.(금) ~ 2023.09.12.(화) 5일간 (10:00~16:30)</li> <li>• 장소 : 당사 분양홍보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12-1)</li> <li>※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검수 일시 등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3.09.18.(월) ~ 2023.09.20.(수) 3일간 (10:00~16:30)</li> <li>• 장소 : 당사 분양홍보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12-1)</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분양홍보관(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 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9.05.(화)~ 2023.09.14.(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09.05.(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3.09.08.(금) ~ 2023.09.12.(화) (10:00~ 16:30)	• 「용인센트레빌그리니에」 분양홍보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12-1)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 사전 전화 방문예약제 운영 - TEL : 1551-2121
예비 당첨자 (예비 순번 압순위 우선, 추후 안내 예정)	추후 안내 예정		

-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 당첨자는 예비 순번 순으로 서류제출 기간을 따로 정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용인센트레빌그리니에」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청약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요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구분	제출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약서	본인	• 당사 분양홍보관에 비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당사 분양홍보관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대리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한함)</li> <li>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li> <li>[신혼특공]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li>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청약불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li> </ul>
	○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li> </ul>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li> </ul>
	해외 단신 부임	○	해외 체류 증빙서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본인
○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원 확인이 안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유, 세대주 및 관계 등 모든정보 표시 발급</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전원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출입국기록 포함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li> </ul>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 분양홍보관에 비치</li> </ul>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함(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으로 정하여 5년이 경과 한 경우</li> </ul>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li> <li>※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기간 직인 날인된 원본)</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의 경우(분양홍보관 비치)</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의 경우</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미혼 확인)</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구비여부 확인서	본인	당사 분양홍보관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li> <li>[※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li> </ul>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참고하여 발급)</li> </ul>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전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li>•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결과)</li> <li>•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li> </ul>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li> <li>※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기간 직인 날인된 원본)</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분양홍보관 비치)</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의 경우</li> </ul>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분양홍보관 비치)</li> </ul>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당사 분양홍보관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 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 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li> </ul>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li> <li>•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구비서류 확인서	본인	당사 분양 홍보관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li> <li>[※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li> </ul>
	○	자격입증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li> </ul>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참고하여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li> </ul>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li> <li>※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기간 직인 날인된 원본)</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분양홍보관 비치)</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신청자가 입양한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전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결과)</li> <li>•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분양홍보관 비치)</li> </ul>	
일반공급 (가점제)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 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 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li> </ul>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당첨자격확인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분양홍보관 비치(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제출시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청약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위임장	청약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철거예정증명서 등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상세"로 발급
-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개인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래 안내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사전 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이 명시되어야 함)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 해당직장 ③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② 해당직장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의 해당	① 해당직장
자영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전년도 종합소득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원본)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자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공단/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또는 ② 사업자 등록증(사본) ③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④ 전년도 재무제표	① 세무서/등기소 ② 해당직장 ③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③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세무서/해당직장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③ ①, ②번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단,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2022년.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분양홍보관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접수장소(분양홍보관) ② 세무서	
자산입증 서류목록	* 「부동산등기법」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조건 청약자에 한함	등기소	

※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등을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세대의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며,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제 증명 서류는 원본을(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증빙서류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자격 입증서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 안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 환급확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세무서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3, 2015, 2017, 2019, 2022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보유 확인 제출 서류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추첨제)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추첨제)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소유현황</li> <li>•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	개별공시지가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시 토지를 소유한 경우</li> <li>-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gt;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출력</li> </ul>
		○	토지등기부등본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시 토지를 소유한 경우</li> <li>-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gt; 등기부 등본 출력</li> </ul>
		○	시가표준액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시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li> <li>- 위택스 &gt; 지방세정보 시가표준액 조회 후 출력</li> </ul>

6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문의전화
당첨자 계약 체결	2023.09.18.(월) ~ 2023.09.20.(수) 3일간 (10:00~16:30)	용인센트레빌그리니에 분양홍보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12-1)	1551-2121

- 상기 일정을 참조하여 반드시 해당일 및 해당시간에 분양홍보관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정당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또는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분양홍보관 내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해외 입국자 또는 확진자로 인한 자가격리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필히 최초 계약 가능일 전까지 분양사무실에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하며, 일정 등을 조정하여야 함. 또한, 현장 내 발열로 인하여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잔금)	우리은행	1006-001-564415	한국자산신탁(주)

-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합니다.
-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 납부 및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시: 101호 홍길동)
- ※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상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 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당첨자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제출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증	본인	• 분양홍보관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용에 한함. • 본인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단, 대리인 계약 시 불가)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홈페이지 및 분양홍보관 비치
	○		수입인지	본인	• 수입인지 구입 및 계약시 첨부(10억 미만 15만원)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아파트 계약위임용” 본인발급용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은 불가)
	○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증명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입인지 구입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

<p>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만 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li> <li>- 당점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점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입주금 및 금융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li> <li>-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점자로 관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당점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li> <li>② 특별공급 당점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점된 사실이 있는 경우</li> <li>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li> <li>④ 부적격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li> </ul> </li> </ul> <p>※ 단, 부적격 당점자 중 부적격 당점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점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당점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점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점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점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li> <li>•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li> <li>• 당점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초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li> <li>•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li> <li>•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li> <li>•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li> <li>•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점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점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li> <li>•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점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li> <li>•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점이 취소된 자는 당점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로 해당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점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li> <li>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점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li> </ul> </li> <li>•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등은 동법 제8조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li> <li>-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및 법인)는 동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li> <li>-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상기 법령에 따른 부동산취득신고 및 자본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li> </ul> </li> </ul>
--

■ 부적격 당점자에 대한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점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점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li> <li>■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점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 관리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점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점일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도권 : 1년</li> <li>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li> <li>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촉지역 3개월</li> </ul> </li> </ul>
--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재산정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제외)
    -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분양홍보관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

**■ 입주예정자에 대한 대출 안내**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는 비규제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잔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잔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공급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공급주체가 지지 않습니다.

**7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 본 아파트는 준공검사(2023.07.28.)된 아파트로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아파트는 전체 세대 발코니 확장설치 및 세대 제공된 품목(가전, 가구 등)은 필수사항이며, 분양가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세대별로 상이하며 같은 타입의 주택형이라고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층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준공된 세대이므로 세대의 기시공된 기본옵션 등 모든 내부 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해야 하며, 기시공된 사항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조명기구 위치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 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나,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2023.07.28.)된 아파트로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계약시 기시공된 모든 내부 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해야 하며, 기시공된 사항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제공 품목 (분양가 포함)
  - ※ 아래의 제공 품목은 사업주체가 무상으로 제공(분양가에 포함)합니다.
  - ※ 상세 적용모델 및 마감사항은 당 사업 홈페이지(<https://www.yongin-centreville.com>) 및 실제 세대를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위	구분	적용 주택형			모델명
		84-기준층	84-다락	복층형 세대	
전체	기본품목				상세 적용모델은 당 사업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ongin-centreville.com">https://www.yongin-centreville.com</a> )
	실크도배지	○	○	○	
	조명(LED 램프)	○	○	○	

	세대 도어 손끼임방지	○	○	○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닥 강마루	○	○	○	
	PVC 몰딩 및 걸레받이	○	○	○	
현관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PUSH&PULL)	○	○	○	
	천정 센서등	○	○	○	
	엔지니어드스톤 디딤판	○	○	○	
	전신거울 및 인테리어 월	○	○	○	
거실	바닥 폴리싱 타일	○	○	○	
	아트월 타일(1200*600)	○	○	○	
침실	안방 파우더 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	○	○	
	침실 불박이장 1개소	○	○	○	
주방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	○	○	
	주방 상판 세라믹 타일	○	○	○	
	주방 벽체 세라믹 타일	○	○	○	
팬트리	아일랜드 식탁 팬던트등	○	○	○	
	시스템 선반	○	○	○	
발코니 / 다용도실 / 실외기실(복층형 세대 제외)	바닥 타일	○	○	○	
	발코니 수전	○	○	○	
	세탁기 수전, 손빨래수전 (다용도실)	○	○	○	
욕실	안방 욕실 비데	○	○	○	
	안방 욕실 청소수전	○	○	○	
빌트인가전류	전기쿡탑 하이라이트 1구 + 인덕션 2구 적용	○	○	○	
	음식물탈수기	○	○	○	
	침니형 후드	○	○	○	
	전기 오븐	○	○	○	
	전동빨래건조대	○	○	X	
	가스보일러	○	○	○	
	전열교환기	○	○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	○	○	
	일괄소등스위치	○	○	○	
	주방 네트워크 스위치	○	○	○	
	슬라이딩 아일랜드 콘센트	○	○	○	
	드레스룸 천정형 제습기	○	○	○	
홈네트워크	도어카메라	○	○	○	
	홈네트워크 월패드	○	○	○	
	주방 TV	○	○	○	
	욕실폰	○	○	○	
	욕실팬	○	○	○	

8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고문에 미 기재된 내용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li> <li>•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택형 신청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람.</li> <li>•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는 171세대(22개 타입)으로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li> <li>•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li> <li>• 단지명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는 향후 시공사[동부건설(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본 공동주택 인근에 도로 등 기타 시설이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진동, 대기질 환경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li> <li>•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작성)</li> <li>•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남서측(폭 20m_인도포함) 도시계획도로 등의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실시 주체 변경 및 형태 변경 또는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남서측 도시계획도로가 개통하기 전 단지과 레벨차이에 의해 옹벽이나 별도 구조물이 노출되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입주 후 개통될 시 공사에 의한 소음, 먼지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서측 뒷밭이 위치하여 냄새(악취), 해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는 교동마을LG자이아파트, 칼빈대학교, 교동마을쌍용아파트, 교동마을정광아파트가 위치해 있으니, 계약전 현장을 확인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람</li> <li>•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소음 및 교통체증이 심화될 경우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조경, 경관 조명, 단지 조명 및 사인,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li>•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 복리시설이고, 별도의 분양시설입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아파트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li> <li>•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및 지하 주동 출입구 등 공용부 디자인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계약전 현장 확인하시기 바람.</li> <li>• 101동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101동 후면부에 위치한 공용화장실 이용시 단지 내 출입이 있을 수 있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본 아파트 건축대지 상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내역 별도 없음.</li> <li>• 본 아파트 건립으로 유입되는 초등학교는 교동초등학교, 중학생은 구성중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만, 교육부 정책 및 주변 개발계획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ul>
<p>분양홍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샘플하우스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샘플하우스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li> <li>•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주변환경 등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설계도서와 모형, CG 등 분양광고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됨.</li> </ul>
<p>단지</p>	<p>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는 2010년 2월에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지로 현행 법규와 적용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2023.07.28.)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로서 사용검사 도면에 표현하지 않은 최종 마감재 표현, 옵션 등은 해당 주택의 실물을 보고 확인하시기 바람.</li> <li>• 당 상품은 사용승인(2023.07.28.)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 후 불법구조물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li> </ul>

시기 바람.

- 본 단지는 3개동으로 구성되며 배치계획상 단지레벨, 주변 환경 등에 따라 각동의 진입부 위치, 높이, 형태, 개소 등이 각 동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내 주동배치 계획에 따른 일부세대 영구 음영이 존재 할 수 있으니, 해당여부를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내 일부 중저층 세대는 외부 도로 및 인접대지 보다 레벨이 낮을 수 있으며 단지 주변 레벨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계부 마감(법면, 돌쌓기, 옹벽 등) 및 인근 주변 건물(교동마을 LG자이아파트, 구성쌍용아파트 등)들과의 간섭으로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지경계에 설치되는 담장, 석축, 조경, 경계석, 펜스 등 각종 시설물 등은 현재 대지경계에 설치된 각종 지장물(담장, 석축, 조경, 경계석, 펜스)에 의해서 일부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마감재 및 시공현황이 샘플하우스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실제 당첨 세대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마감 및 옵션 등의 차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산책로 및 근린생활시설 통로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됨.
-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건축 기본마감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지상에서 각 동으로 진입하는 주동 출입구의 위치는 주동형태 및 대지의 단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지하헬륨,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악취), 해충, 분진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전 현장 방문하여 실물을 보고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층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발코니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으로 함.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각 용도별 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함.
-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 등에 표시되는 주변단지 및 건물, 시설물, 녹지, 도로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된 내용을 임의 제작한 내용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향후 관리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음, 특히 세대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은 사유화할 수 없음.
- 승강기에는 냉/난방 기능이 적용되지 않음.
- 세대 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이 협소하여 일부세대는 세대현관문 개폐시 대기중인 입주자와 간섭이 될 수 있으며 세대 내부가 보이는 등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변의 기존 건축물로 인하여 인접 세대의 향, 조망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출입구, 각종 공원, 도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야간 조명 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변 현황 및 현장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 계단, 조경시설물, 단지 산책로 인해 일부세대는 시야에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음.
- 저층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 및 구조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보안등, 옥탑 및 조경용 조명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에는 지하수 또는 외부에서 유입된 물을 수중펌프를 통하여 강제 배수하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어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 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분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상주차장 계획 및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 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음.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저층부에 지하주차장 진입램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분진,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분진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여건상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D/A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승강기, 발전기, 각종 기계, 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1,3호 / 102동 1,2호 / 103동 1,2호의 침실 또는 현관출입구는 승강로와 접하여 있으므로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승강기 기계실로 인해 세대 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에는 차량 진출입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에 위치한 단지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등)로 인하여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101동 1,2,3호 라인 인근에는 개폐기 패드가 위치하여 한전에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출입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조망될 수 있음.
-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및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위생기구, 창호, 등기구 및 각종가구의 종류,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타자가 있을 수 있음.
- 경관조명, 조형물 및 단지리고 사인물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입주민 편의 및 보안, 생활필수시설, 여가등을 위한 시설(CCTV,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RFID),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 장애인 슬로프등)로 인한 소음 및 빛반사, 조망 저해, 프라이버시 간섭등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이로인한 설계 변경 및 설치 위치 변경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면 마감재 종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저층 세대는 지상 소방차 이동동선,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해 일조권·조망권·환경권, 소음·진동·냄새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정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다른 동에서 이용이 불편할 수 있음.
- 쓰레기분리보관소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공용조명등 & 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수목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시설, 통신시설물, 공용부 환기설비,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일부 부대시설의 경우 지하층 등에 위치함에 따라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에 불리할 수 있음.
- 부대 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음.
- 향후 부대복리시설 등의 실외기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미관, 소음 및 냄새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로는 주동 구조물 하부를 이용함에 따라 기둥이 노출됨을 유의바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법적 기준에 맞춰 설치되며, 이에 따른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별 입구 인근에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이 설치되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시 이전요구 등을 할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근 세대에서는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본 아파트는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시공됨.</li> <li>•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이 동 별로 상이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 레벨은 건물 입구 및 인접 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일부 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li> <li>• 도로에 면한 세대는 소음 피해 및 사생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3동 지상 1층에 경로당, 관리사무소 및 작은도서관, 103동 지하 1층에 피트니스센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민공동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 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등)으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출입구 및 비상차량 출입구에 인접하는 세대는 차량 통행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아파트 지상 1층 및 지하1층 승강기 홀 크기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에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동 주현관, 승강기 홀 등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됨.</li> <li>•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 개소 변경 및 운영에 의해 생기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하시기 바람.</li> <li>• 이동통신설비(중계장치)는 옥상층(102동)에 설치될 예정이고, 옥외안테나(이동통신안테나, 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등)는 옥상층(102동) 및 옥탑(102동)에 설치될 예정임.</li> <li>• 101동 1~3호 라인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일부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됨.</li> <li>• 주민공동시설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li> <li>•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li>•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장비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양호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다음과 같은 설계 및 시공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람,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101동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용 화장실)이 계획되어 있어 입점업체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냄새로 불편을 겪을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람.</li> <li>• 근린생활시설 1호실, 8호실의 후면에 실외기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다락형 세대의 경우 다락쪽에서 외부공간으로 출입이 불가능하며, 해당 층 외부공간을 점유할 수 없음.</li> <li>• 복층형 세대의 경우 테라스형 외부공간이 존재하며, 각 타입별로 위치 및 면적이 상이하고, 이용에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li> <li>• 본 단지 주차계획은 지상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포함 지상주차장 14대 및 비상차량 동선이 계획되어있고, 지하1층에서 지하2층까지는 아파트 주차공간 179대로 총 193대가 계획되어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북측 지상 1층에 4대가 설치되고, 단지계획의 특성상 차량 주출입구 및 단지 내 지상1층 일부 도로를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입점자, 근린생활시설 이용자, 쓰레기수거차량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이에 따른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구획은 불가함을 확인하여야 함.</li> <li>• 단지 내에 101동, 북측의 근생주차장 옆 생활폐기물 보관소(음식물쓰레기 포함)는 근린생활시설 전용으로 아파트 입주민은 사용할 수 없음.</li> <li>• 단지 지상 101동 필로티에 20대, 102동 및 103동 외부에 10대씩 총 자전거 주차가 40대가 계획되어있으며, 자전거 주차 형평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101동 근린생활시설 지붕은 101동 2층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점유할 수 없음.</li> <li>• 101동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상부에 별도의 피트공간이 없어 세대의 오배수 횡주관이 근린생활시설 천장 공간에 설치되어 향후 유지 보수시 근린생활시설의 영업을 방해하게 되어 피해 보상이 입주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li> <li>• 승강기에 인접한 세대(101동 84H, 84I, 131B, 132, 102동 84B, 84J, 103동 84B, 84D, 84G, 139)는 승강기로 인한 진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02동 1층 옹벽에 인접한 84A타입은 측벽부위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옹벽과의 레벨차 및 옹벽위 산책로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준공시 경계측량 결과 인접 단지(쌍용 APT) 부지가 본 아파트 부지에 일부 위치하여 그 경계를 경계침목으로 설치하여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람.</li> </ul>
<p><b>외관 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li> <li>• 공용부위 조명 및 보안등, 조경용 조명, 사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li>•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li> <li>•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야간조명 등에 의해 인근 세대에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p><b>주민공동 시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구성 이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해야 함.</li> <li>• 부대복리시설은 시공사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집기류 구매,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양지하기 바람.</li> <li>• 분양홍보용 CG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집기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제공되는 품목 외 집기류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제공되는 집기류와 상이할 수 있음.</li> <li>•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103동), 경비실(101동), 경로당(103동), 피트니스센터(103동 지하1층), 작은도서관(103동 지상1층)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음.</li> <li>• 분양홍보용 CG, 샘플하우스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li> <li>•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li> </ul>
<p><b>시스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내 CCTV,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CCTV는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p><b>주차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 지하2층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101동 앞 램프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에는 차량 진출입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출입 가능 통과 높이는 2.3m, 주차구역 유효 높이는 2.1m로 지하 주차장으로 택배 및 이사차량 진입시 유의하기 바람.</li> <li>•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 주차4대와 아파트 주차 10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법적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계획한 지상주차로 단지 출입을 막을 수 없음.</li> <li>• 지하1층, 지상에 차량출입 차단기가 설치 되어 있으며, 임의로 위치 이동이 불가능함.</li> <li>•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 지상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합산대수로 각 동 별 주차대수를 인정하지 않음.</li> <li>• 택배차량 및 이사차량, 쓰레기수거차량 등이 지상 단지 내 통행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행에 따라 단지내 도로 인접세대에 소음, 매연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배치 계획 상 동별 주차구획 배분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동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출입동선이 멀어 불편할 수 있음.</li> <li>• 각 동 주차대수를 임의로 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이용에 있어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 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따라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지상, 지하주차장은 장애인주차, 경형주차, 전기자동차충전시설과 인허가청의 요구 및 기준에 따라 배치되어 있음.</li> <li>• 지상,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규격은 최초 사업계획승인(2010년도) 기준에 따라 일반형 크기(2.3mX5.0m)및 확장형 크기(2.5mX5.1m)로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에 따라 기둥, 벽체 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li> <li>• 지하층에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해당 위치 지상부에 발전기 배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인근동 세대쪽으로 유입될 수 있음.</li> <li>• 지하2층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설치(충전시설 완속3, 급속1개)되어 있으며, 주차대수에 포함되며,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시 해당법령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li> <li>• 전기차 충전 요금, 청구방식 등은 운영방식 및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되어 설치됨.</li> <li>•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에서 옥외로 직통하는 계단이 102동 103동 사이에 1개소 설치되어 있음.</li> <li>•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전용 및 공용화하여 사용 할 수 없고 또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li> </ul>
<p><b>단위세대 및 마감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의 부분은 상이할 수 있음.</li> <li>• 천장고 및 실 규격은 시공허용범위 내에서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세대 내 가스계량기는 노출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가스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li> </ul>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다량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배관이 층 하부에 시공되는 층하배관 방식으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고 일부 세대는 욕실 외 공간의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복층형 세대 중 일부 세대의 욕실은 층상배관으로 설치됨.
- 일부 복층세대의 복층 난방분배기는 불박이장 또는 펜트리 내부에 위치하여 공간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복층 및 다락세대 내의 계단 및 계단 하부 펜트리 공간은 동호수 별로 상이하오니 세대를 직접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 외기에 접하는 일부 저층세대의 계량기 내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시공되어 있으며, 공용요금미 아닌 해상 세대 전기요금미 발생하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싱크대 하부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을 사용할 수 없음.
- 세대 환기 장치 및 보일러 등 장비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실내로 전달될 수 있음.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세대 외벽에 환기캡이 설치됨.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배수배관, 배수구 등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수전, 배수구의 위치 및 개소는 세대 별로 상이하하며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치 할 수 없음.
-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치 할 수 없음.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아래층 세대로 대피하여야 함.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 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구와 실외기 설치, 천장에는 환기장치 장비 및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설치 품목은 공간을 반드시 사전에 실측 확인 후 구입 설치하여야 하며 하자 대상이 아님.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함.)
- 단위세대 평면에 따라 세탁기와 건조기 직렬(위시 타워등) 설치시창호 개폐에 간섭, 가전 사양에 의해 가스배관 이동필요, 보일러 유지보수에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비 및 법적문제는 시공하자가 아니며,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세대 싱크대 주방가구 상판은 상판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음.
- 세대 급수,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음.
- 세대 환기설비는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상부에 설치되며 환기용 배관이 천장 상부에 노출 시공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설비(전열교환기)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발코니 창호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 외부 온도차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다용도실은 세탁기, 건조기 등의 사용으로 습도가 높아져 결로, 곰팡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실간 벽체 대부분이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함.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샘플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 무관함.
- 실별 치수에는 천장 몰딩이나, 하부 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 계획하시기 바람.
-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음.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각종 가구에 전기/통신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아일랜드장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함.
- 각 형별 타입에 따라 실외기실의 위치가 상이하므로 이로 인한 침실 및 거실등에서 실외기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별 코어에 엘리베이터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대 현관과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수 있음.
- 서비스 업데이트와 서비스 제공(외부 제어 및 연동)을 위하여, 원패스, 홈넷 등의 장비는 인터넷 회선(고정ip)이 연결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회선비 및 유지관리는 홈넷 업체와 입주자 대표회가 용역 계약하여 관리되어야 함.
- 전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중 일부는 기간사업자의 연동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기간사업자(통신사, 포털사, 가전사 등)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유료/무료/서비스 내용) 될 수 있음.
- 음성인식스피커는 SKT 제품으로 제공됨.(입주자가 타 통신사 사용자 음성인식스피커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의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SKT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용 무선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함. (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 및 기능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기간사업자(통신사, 포털사, 가전사 등)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유료/무료/서비스 내용) 될 수 있음.)
- 세대 내 동체감지기가 설치됨. (아파트 1~3층 및 최상층의 경우는 발코니, 침실, 거실 등에 설치되며, 기타 층은 거실에 설치됨)
-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운반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별로 빌트인 가전 및 가구, 창호 등 기본제공품목 및 서비스 공간의 제공여부가 상이하므로 계약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평면도에 따라 냉장고 하부에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도면과 다를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 시공 및 설치되는 모든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며, 표면에 크랙처럼 보이는 GRAIN은 자재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컨셉으로 하자와는 무관하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샘플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규격,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찍힘, 갈라짐 등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호실 내부에 자연환기량감소 및 습도 증가시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주기적인 실내 환기로 결로발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 내부에 시공되는 도배지의 색상에 따라 도배 조인트면이 보일 수 있음.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져있더라도, 자재특성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하며, 입주 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임.
- 인조대리석류(화장대상판, 욕실선반, 현관디딤판등)은 자재의 특성상 무늬와 색상 등이 동일하지 않으며,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 되는 관계로 본 공사시 연결부위가 발생(타입별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샘플하우스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쿡탑주위의 가구의 경우, 사용하는 후라이팬, 냄비 크기에 따라 그물림이 생길 수 있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함.
-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됨.
- 세대 내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② 일반가구 상부와 하부, 후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④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 내 천장형 에어컨은 무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설치위치, 수량 및 용량 등은 주택형별로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바람.
- 테라스형 외부공간은 층별, 타입별 테라스의 위치 및 면적, 형태가 서로 상이하므로 세대별 대지지분 및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소유의 면적으로 공부상에 등재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복층형 세대의 테라스형 외부공간은 설계계획상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에서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관리자의 진입 요구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층형 세대 구조상 전유부(소유부)가 아닌 타 세대의 지붕층이 외부공간으로 구성된 구조로써 인접세대에서 전용화 하거나 일체의 구조 변경을 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및 마감재 변경, 추가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본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관계법령에 따른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또한 무단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본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물을 수 없음.</li> <li>• 복층형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층 세대에서 일부 보일 수 있고, 옥상을 통하여 외부인이 침입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복층형 세대와 인접한 증층세대에는 소음,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함.</li> <li>• 테라스형 외부공간에 면하는 외부 창호에는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테라스형 외부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됨.</li> <li>• 테라스형 외부공간에 사생활침해, 보완상 이유로 경계벽,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으니, 현장확인 하시기 바람.</li> <li>• 테라스형 외부공간 바닥 마감은 타일로 마감되어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우수드레인이 노출시공 되어 드레인 막힘으로 인한 물넘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접세대 혹은 입주자대표회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li> <li>• 테라스형 외부공간 진출입시 실내외부의 단 차이 및 빗물침투방지를 위한 창문의 턱에 발이 걸리거나 부주의에 의한 낙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함.</li> <li>• 복층형 세대는 별도의 실외기실이 설치되지 않아 테라스형 외부공간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음.</li> <li>• 다락세대는 다락층 바닥난방이 설계되어 있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li> <li>• 복층세대 테라스에는 통기관으로 인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붕에서 내려오는 우수드레인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복층세대의 경우 전동빨래건조대가 별도 설치되지 않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li> <li>• 지하주차장 E/V홀의 경우 각 홀의 층고가 상이하여, 커튼박스가 시공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li> <li>• 84C, 84E, 84L, 84O타입에는 다락이 설치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냉난방시설 및 위생설비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p>샘플하우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샘플하우스로 사용되는 세대(101동 205호)의 경우 샘플하우스 사용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li> <li>• 샘플하우스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책장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액자, 소품 및 일부 연출용 벽지등은 세대 연출 및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li> <li>• 샘플하우스가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상담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li> <li>• 샘플하우스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샘플하우스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샘플하우스를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홈페이지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샘플하우스를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li> <li>•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샘플하우스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li> <li>•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 면적이라 하더라도 샘플하우스와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람.</li> </ul>

## 9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예정일 : 2023년 10월**

- 입주지정기간 : 입주예정일로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
-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입주증 발급일 또는 키 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됨**

##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 ■ 부대 · 복리시설

- 경로당(98.9046㎡), 작은 도서관(60.1970㎡), 휘트니스(170.1732㎡), 경비실(14.9177㎡) 등 (단, 면적은 해당 공용부를 포함함.)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 구획 높이
최고 2.3m	2.3m	2.1m

### ■ 내진설계

-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0.113g

###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구 분		적용여부	비 고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 설치는 비난방공간과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해당없음	개별 보일러 설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설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건축 감리	전기 감리	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
상 호	(주)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한승이엔씨	(주)한승이엔씨
금 액	744,300,000원	140,000,000원	180,000,000원

### ■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이트타워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70012
- 사업방식 : 차입형 토지신탁

##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분양대금 완납시 개별등기

### ■ 차입형태지신탁

- 아래 '차입형태지신탁'에 관한 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합니다.
- 본 사업은 위탁자인 (주)에스디이브이,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 시공사인 동부건설(주) 간에 체결한 차입형태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에스디이브이이고, 동부건설(주)는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 의무를 다하며, 한국자산신탁(주)는 차입형태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중 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동주택 공급대금(계약금 및 잔금)은 '한국자산신탁(주)'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주)에스디이브이 및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가 체결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입니다.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시공상의 모든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피스, 미시공 등을 포함)은 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한국자산신탁(주)가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의무,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 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에스디이브이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고, 공급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위탁자 겸 수익자 (주)에스디이브이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매도자의 하자책임, 소유권 이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에스디이브이가 부담합니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	한국자산신탁(주)	(주)에스디이브이	동부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4층 (여의도동, 교보증권 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삼동, 코레이트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2196304	110111-6321650	110111-0005002

■ 분양 홈페이지 :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홈페이지 (<https://www.yongin-centreville.com>)

■ 분양홍보관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12-1

■ 분양문의 : 1551-2121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에 입주자모집을 하는 주택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실제 당첨된 세대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세대현황 및 마감재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샘플하우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 ※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샘플하우스 운영기간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